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24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김승수
이성권 · 김대식 · 김성원
진종오 · 고동진 · 배준영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AI를 활용한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이 규정한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특례가 당초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 향상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디지털 교육 전환 과정에서 공교육 이탈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고도화된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을 제공해 교육의 기

회균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 검토가 필요함.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부 항목을 추가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의3,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 규정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u>러움을 겪는 학생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 화학생등, 「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 「장 애포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 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u></p> <p>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2029년 12월 31일</u>----- -----.</p>
---	--